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4. 11. 19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안사유

○ 청소년 수련 시설의 확보와 구민의 농촌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충남 장현 초등학교의 폐교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중 충남 보령 교육청에서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년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재 검토코자 하며

- 당산동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효성아파트) 입지 결정시 공원 용지로 확보된 부지에 특별 교부금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절차 이행중 서울시 투융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후 재정상태에 따라 내년 집행이 어렵고
- 신길동 뉴타운 계획 용역비는 서울시의 3차 뉴타운 지구 지정 연기로 인하여 금년에 사업 계약이 어려우며,
- 또한 영등포벤처 센터 건물 매입비는 벤처센터 설립 예정지의 건설사와 기부채납과 원가매입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고 교통영향 평가등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 신길동 226~277간 도로 개설공사는 뉴타운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이 재배치 되어야 하므로 지구 지정 결정시까지 보류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함.

□ 주 요 내 용

○ 예산규모(총괄) ————— 240,207,52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계	당초예산	1차추경	간주처리		
합 계	240,207,525	240,207,525	203,595,699	22,861,341	13,750,485	0	
일반회계	199,309,463	199,309,463	169,900,000	18,794,198	10,615,265	0	
특별회계	40,898,062	40,898,062	33,695,699	4,067,143	3,135,220	0	
의료보호	62,060	62,060	53,943	8,117	0		
주민소득	1,209,210	1,209,210	863,730	345,480	0		
주 차 장	39,626,792	39,626,792	32,778,026	3,713,546	3,135,220		

○ 주요내역(명시이월) ————— 총 5,527,000천원

○ 행정위원회 소관 : 300,000천원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 5,227,000천원

- 폐교부지 매입비 ————— 300,000천원
-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 ————— 2,400,000천원
- 신길동 뉴타운 계획 용역비 ————— 189,000천원
- 영등포벤처센터 건물 매입비 ————— 2,000,000천원
- 신길동 226~277간 도로개설공사 ————— 638,000천원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 검 토 의 견

- 금년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건에 52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영등포벤처센터 설립건은 현재 건설사와 매입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센터설립비 20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 신길동 226~277 도로개설공사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결정시 까지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 공사비 6억 3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 신길동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연기됨에 따라 용역비 1억 8천 9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 끝으로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건은 특별교부금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던중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재상정토록 의결됨에 따라 공원조성비 2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각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12. 9

보고자 : 이 남 식